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238호

**남해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5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으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 을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으로, “운영등에 관하여” 를 “운영 등에” 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위원회” 을 “결산검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 으로, “3인이상
5인이하로” 를 “4명으로”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회의원” 을 “남해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3조제2항 중 “승락” 을 “승낙”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 을 “대하여”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 를 “남해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를 “남해군” 으로, “관련있는” 을 “관련 있는” 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장이 지정한” 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장이 지명한” 으로 한다.

① 위원 중에서 의회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제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4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0조에 따른” 으로,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4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를 “설명할 경우에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를 “토요일과 공휴일 및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0조에 따른” 으로, “10만원” 을 “15만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12조에 따른” 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한” 을 “관한” 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위 축 장

소속(주소)
성 명

귀하를 ○○○○ 회계연도 남해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남 해 군 의 회 의 장 (인)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19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을 공포한다.

2017년 5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남해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2015.11.19.) 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남해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남해군 규칙 제1120호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7년 5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분양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인 경우)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건축물관리대장 1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 개시일 또는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임대차계약서(임대인 경우)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본 1부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투자
입지보조금신청서						
외국 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국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	신고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 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USD) 상당, %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산업재산권등		
구분	신규 증자			사업개시 예정일		
시설입지 내역	소재지					
	면적	총 부지면적: m ² , 시설면적: m ² (구입가격: 원/m ²)				
	업종			종업원 수		
	착공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보조사업 담보방법						
보조금신청액			만원(USD 상당)			
<p>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p> <p>남해군수 귀하</p>						
구비 서류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1부 2.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및 투자실행이행각서 1부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압대차계약서(압대인경우) 사본 1부 5. 외국인투자지역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시설 투자금액을 증빙 하는 자료 1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건축물 관리대장 		수수료 없음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별지 제9호서식】

본 점 이 전 보 조 금 신 청 서

신 청 인	상 호 또는 명 칭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인	대 표 자 주 소 (법 인 은 소 재 지)		전 화	
			F A X	

본 점 이 전 내 역

구 분	이 전 전	이 전 후
본 점 소 재 지		
공 장 소 재 지		
본 점 근 무 인 원		
사 옥 가 액	원	원
소 유 형 태	□ 임 차 □ 취 득	□ 임 차 □ 취 득
보 조 금 신 청 액	백 만 원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이전인원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임대차계약서(임대인 경우)사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점이전을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본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 규칙 제1121호

남해군 재정투·용자사업 심사 규칙 폐지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재정투·용자사업 심사 규칙 폐지규칙을 공포한다.

2017년 5월 16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재정투·용자사업 심사 규칙 폐지규칙

남해군 재정투·용자사업 심사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7 - 4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684-4 외 2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차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부 이

연번	중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표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삼곡리 1087-1, 1089-1	경상남도 남해군 남서대로 684-4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2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차장리 474-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49-13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2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54-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611-19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56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692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240-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790-11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6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747-7, 747-9, 747-1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487-1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7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물리리 신84-8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녹림로 27	20090427	특일에 파견되어 해군의 경제발전기 기여한 독일거주교도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상할 독립마을이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
8	경상남도 남해군 디조면 송정리 792-2	경상남도 남해군 디조면 미송로 295-6	20090427	미조리(미이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서 송정리(스니-무 숲 위쪽에 있는 마을)에 정자가 있었던 곳)로 연결되는 도로임
9	경상남도 남해군 디조면 송정리 신322-7	경상남도 남해군 디조면 미송로 295-7	20090427	미조리(미이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서 송정리(스니-무 숲 위쪽에 있는 마을)에 정자가 있었던 곳)로 연결되는 도로임
10	경상남도 남해군 디조면 송정리 788	경상남도 남해군 디조면 미송로 295-9	20090427	미조리(미이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서 송정리(스니-무 숲 위쪽에 있는 마을)에 정자가 있었던 곳)로 연결되는 도로임
1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755-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양로 195	20090427	초곡, 초원의 골짜기)과 초양(초원의 양지 쪽)을 잇는 도로임을 반영
1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연리 신149-1, 신149-1, 691-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 447-42	20090427	고려, 조선시대 개창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1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1108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221	20090427	남면의 중심 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1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668-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270-106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사대리 신31-1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872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벌리 443, 44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427-8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서면 서상리 126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512번길 82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12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1099-2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749번길 52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49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17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100번길 48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0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648-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남로 247번길 50	20090427	당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풍리 52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당남로 247번길 116	20090427	당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항리 474-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248번길 84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경상남도 남해군 디조면 송정리 16-10	경상남도 남해군 디조면 동부대로 666번길 73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6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159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두양로 150번길 114	20090427	두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읍도리 2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164번길 20-41	20090427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배 지

연번	중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441-2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441-21	20170406	신축에 의한 불만구 변경으로 새 도로명주소 부여

남해군 고시 제2017 - 47호

송정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송정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4일

남 해 군 수

1. 관광지명 : 송정관광지
2. 위 치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120-1번지 일원
3. 지정면적 : 605,283㎡(변경없음)
4. 주요 변경내용(사업기간 연장)
 - 당초 : 1998.10.15 ~ 2017. 5. 10
 - 변경 : 1998.10.15 ~ 2019. 5. 10
 - 변경사유 : 남해군에서 시행예정인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사업』 기간 반영

남해 송정관광지 조성계획결정(변경)

I 관광지개요

관광지지정

- 관광지명 : 남해 송정관광지
-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120-1번지 일원
- 면 적 : 605,283m²
- 지 정 일 : 1994.10.21
- 시설개요 : 공공편익, 숙박, 상가, 휴양문화, 운동오락, 기타시설

조성계획(변경)

- 사 업 비 : 1,159억원(공공 207억원, 민자 952억원)
- 투자계획 : (기정)1998.10.15.~ 2017.05.10.
→ (변경)1998.10.15.~ 2019.05.10.(2년 연장)
- 사업내용
 - 공공 : 도로, 주차장, 오수처리장, 샤워탈의장·화장실 등
 - 민간 : 숙박·편의시설, 상가, 음식점, 청소년수련원, 전망대 등
- 변경사유
 - 남해군에서 시행예정인 『보물섬 해안조망 실�크로드 조성사업』 사업기간 반영

II 세부계획

관광지 지정

○ 관광지 지정(변경없음)

(단위 : ㎡)

기정	증(△)감	변경	변경사유
605,283	-	-	-

○ 용도지역 현황(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용도지역	합계	605,283	100.0	
	관리지역	605,283	100.0	
	계획관리지역	598,732	98.9	
	생산관리지역	1,799	0.3	
	보전관리지역	4,752	0.8	
	자연녹지지역	-	-	
	농림지역	-	-	
	미지정	-	-	

조성계획

○ 시설지구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연면적(㎡)	도입시설
	기정	변경	증(△)감			
계	605,283	-	-	100.0	184,700	
공공·편의시설지구	105,640	-	-	17.6	3,600	오수처리장, 샤워탈의장, 화장실, 관리사무소, 마을회관
숙박시설지구	171,626	-	-	28.4	137,300	관광숙박·편의시설
상가시설	29,156	-	-	4.8	22,500	상가, 음식점
운동·오락시설	5,112	-	-	0.8	-	게이트볼장, 해수풀장
휴양·문화시설	31,745	-	-	5.2	21,300	야외공연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원, 전망대, 공원
기타시설	262,004	-	-	43.3	-	녹지

○ 시설지구별 건축물 설치계획

건 축 물 설 치 계 획								비 고
건축물용도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동수		
합 계	605,283	184,700				79		
공공편의 시설지구	소 계	105,640	3,600				7	
	주 차 장	24,112	-	-	-	-	-	가-1~2
	오수처리장	2,828	1,000	40.0	100.0	1	2	가-3~4
	샤워탈의장/화장실	451	350	40.0	100.0	2	1	가-5
	관리사무소	2,390	1,900	40.0	100.0	2	2	가-6~7
	마을회관	436	350	40.0	100.0	2	2	가-8
	도 로	75,423	-	-	-	-	-	-
숙박시설 지구	소 계	171,626	137,300				20	
	관광숙박·편의시설	171,626	137,300	40.0	100.0	2,4	20	나-1~16
상가시설 지구	소 계	29,156	22,500				27	
	음 식 점	3,217	2,500	40.0	100.0	2	9	다-1~2
	상 가	25,939	20,000	40.0	100.0	2	18	다-3~9
운동오락 지구	소 계	5,112	-					
	게이트볼장	1,065	-	-	-	-	-	라-1
	해수풀장	4,047	-	-	-	-	-	라-2
휴양문화 시설지구	소 계	31,745	21,300				25	
	야외공연장	498	-	-	-	-	-	마-1
	청소년수련원	10,884	8,700	40.0	100.0	4	18	마-2
	야 영 장	5,308	4,200	40.0	100.0	2	6	마-3~4
	공 원	8,563	3,400	40.0	100.0	2	1	마-5~6
	전 망 대	6,492	5,000	-	-	-	-	마-7
기타시설 지구	소 계	262,004	-				-	
	녹 지	262,004	-	-	-	-	-	바-1

○ 총 투자계획 (변경)

- 총사업비 : 1,159억원 (공공 207억원, 민자 952억원)
- 투자계획(당초) : 1998.10.15 ~ 2017.05.10
- 투자계획(변경) : 1998.10.15 ~ 2019.05.10
- 투자사업비 총괄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16년까지	17년 이후('17 ~ '19)	비고
계	1,159	353	806	
공공	207	207	0	
민간	952	146	806	

Ⅲ 조성계획 세부시설결정 조서

조성계획 조서(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조서 총괄(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605,283	-	605,283	100.0	
공 공 편 익 시 설	105,640	-	105,640	17.6	
숙 박 시 설	171,626	-	171,626	28.1	
상 가 시 설	29,156	-	29,156	4.8	
운 동 오 락 시 설	5,112	-	5,112	0.2	
휴 양 문 화 시 설	31,745	-	31,745	6.7	
기 타 시 설	262,004	-	262,004	42.6	

▣ 토지이용계획조서(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명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05,283	-	605,283	100.0	
공공편익 시 설	소 계	105,640	-	105,640	17.5	
	주 차 장	24,112	-	24,112	4.0	가-1~2
	오수처리장	2,828	-	2,828	0.5	가-3~4
	샤워탈의장/ 화장실	451	-	451	0.1	가-5
	관리사무소	2,390	-	2,390	0.4	가-6~7
	마을회관	436	-	436	0.1	가-8
	도 로	75,423	-	75,423	12.5	-
숙박시설	소 계	171,626	-	171,626	28.4	
	관광숙박· 편의시설	171,626	-	171,626	28.4	나-1~16
상가시설	소 계	29,156	-	29,156	4.8	
	음 식 점	3,217	-	3,217	0.5	다-1~2
	상 가	25,939	-	25,939	4.3	다-3~9
운동오락 시 설	소 계	5,112	-	5,112	0.8	
	게이트볼장	1,065	-	1,065	0.2	라-1
	해수풀장	4,047	-	4,047	0.7	라-2
휴양문화 시 설	소 계	31,745	-	31,745	5.2	
	야외공연장	498	-	498	0.1	마-1
	청소년수련원	10,884	-	10,884	1.8	마-2
	야 영 장	5,308	-	5,308	0.9	마-3~4
	공 원	8,563	-	8,563	1.4	마-5~6
	전 망 대	6,492	-	6,492	1.1	마-7
기타시설	소 계	262,004	-	262,004	43.3	
	녹 지	262,004	-	262,004	43.3	바-1

남 해 군 공 보

(20) 제 582 호

2017년 5월 16일

▣ 조성계획 세부시설 건축물 설계계획 내역(변경없음)

건 축 물 설 치 계 획							비 고	
건축물용도	부지면적 (㎡)	건축연면 적 (㎡)	건폐율 (%)	용적률 (%)	총수	동수		
합 계	605,283	184,700				79		
공공편익 시설지구	소 계	105,640	3,600				7	
	주 차 장	24,112	-	-	-	-	-	가-1~2
	오수처리장	2,828	1,000	40.0	100.0	1	2	가-3~4
	샤워탈의장/화장실	451	350	40.0	100.0	2	1	가-5
	관리사무소	2,390	1,900	40.0	100.0	2	2	가-6~7
	마을회관	436	350	40.0	100.0	2	2	가-8
	도 로	75,423	-	-	-	-	-	-
숙박시설 지구	소 계	171,626	137,300				20	
	관광숙박·편의시설	171,626	137,300	40.0	100.0	2,4	20	나-1~16
상가시설 지구	소 계	29,156	22,500				27	
	음 식 점	3,217	2,500	40.0	100.0	2	9	다-1~2
	상 가	25,939	20,000	40.0	100.0	2	18	다-3~9
운동오락 지구	소 계	5,112	-					
	게이트볼장	1,065	-	-	-	-	-	라-1
	해수풀장	4,047	-	-	-	-	-	라-2
휴양문화 시설지구	소 계	31,745	21,300				25	
	야외공연장	498	-	-	-	-	-	마-1
	청소년수련원	10,884	8,700	40.0	100.0	4	18	마-2
	야 영 장	5,308	4,200	40.0	100.0	2	6	마-3~4
	공 원	8,563	3,400	40.0	100.0	2	1	마-5~6
	전 망 대	6,492	5,000	-	-	-	-	마-7
기타시설 지구	소 계	262,004	-				-	
	녹 지	262,004	-	-	-	-	-	바-1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7 - 427호

남해문화체육센터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12에 위치한 남해문화체육센터의 CCTV 추가설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5. 11.(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0일

남 해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남해문화체육센터 CCTV 추가설치
- 사업규모 : 남해문화체육센터 CCTV 내부 3대 추가 설치
- 설치사유 : 시설 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장소 :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12 『남해문화체육센터』

연번	시설명	위 치	설치대수	비고
계			19대	
1	남해문화체육센터	남해문화체육센터 내부	3대	추가 설치
2	남해문화체육센터	보물섬 시네마	8대	기존
		남해문화체육센터 외부	5대	기존
		남해문화체육센터 내부	3대	기존

4. 촬영범위 및 시간 : 남해문화체육센터 내·외부 24시간 연속촬영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04. 20.(목). ~ 05. 11.(목) (21일간)

6. 공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7. 의견서 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05. 11.(목) 도착분까지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남해문화체육센터 내 작은영화관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860-3748)

라. 보내실 곳 : 우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마. 문의 및 안내 : 남해군청 문화관광과(☎055-860-8624)

붙임 의견제출서 1부.

의 건 제 출 서

행정예고명	남해문화체육센터 CCTV 추가설치		
의 건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위치	의견제출 내용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12 남해문화 체육센터			

남해문화체육센터 CCTV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7 - 455호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상위 법령과 도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에 따라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용어 개정(안 제2조, 제25조, 별표, 별지)
-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통합하여 ‘벽면 이용 간판’으로 용어 개정(안 별표1)
-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신설 및 전자게시대 설치규제 완화(안 제6조)
-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 없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에 대한 조항 삭제

○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등 반영

-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례 규정 삭제(안 제9조)
- 허가신청 시 일부 서류면제 대상에서 시행령에 의한 신고대상 광고물 삭제(안 제2조)
- 신고만으로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전광류 삭제(안 제4조)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등 반영
 - 현수막 지정계시대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정 (안 제20조 부터 안 제20조의1)
 - 허가수수료 반환 규정 명시(안 제27조제2항)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대상 및 방법 추가(안 별표2)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교육대상에 포함하고 사이버교육을 교육방법에 추가
- 불법 옥외광고물의 수거 보상금제 신설(안 제12조)
 - 불법 벽보·전단·현수막 등을 제거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수수료 및 과태료 조항 정비 및 항목 추가(안 [별표 3], [별표 4], [별표 6])
 - 허가·신고 수수료 항목 정비·신설(입간판) 및 금액 조정
 - 안전점검 수수료 항목 정비 및 금액 조정
 -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 장당으로 계산

4. 개정 조례 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05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전화 : 055-860-3074, FAX : 055-860-373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전화 : 055-860-30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법 규 명 :

성명 (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

남해군 공고 제2017 - 455호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를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로 한다.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4.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남해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 1.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 2.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이용간판
-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계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계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주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군의회 의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는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는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경상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장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불법 옥외광고물의 수거 보상금제 운영) ① 군수는 옥외광고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불법 벽보·전단·현수막 등(이하 “불법광고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전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표시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세로규격이 6미터 초과(지주이용 광고물은 최고높이를 포함한다)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는 제외한다.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전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① 군수는 도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은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 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 위탁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0조의1(지도·감독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 ⑤ 군수가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제4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현수막 표시기간 및 철거 등)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0일 이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표시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할 수 있다.

②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게시기간과 관계 없이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22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제거한 일시, 보관 장소 및 보관일시, 담당자 등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서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10조2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위탁 받은 자에게 교육계획을 제출받아 위탁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으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다음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 1. 과오납한 경우
-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p>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p> <p>1) 면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p>2) 면적 5㎡ 이상 1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p>3) 면적 10㎡ 이상 2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p>4) 면적 20㎡ 이상</p>	<p>20만원</p> <p>25만원</p> <p>30만원</p> <p>40만원</p> <p>50만원</p> <p>60만원</p> <p>70만원</p> <p>80만원</p> <p>90만원</p> <p>100만원</p> <p>120만원</p> <p>140만원</p> <p>160만원</p> <p>180만원</p> <p>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p>
<p>나. 돌출간판</p> <p>1) 연면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p>20만원</p> <p>25만원</p> <p>30만원</p> <p>40만원</p>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p style="text-align: right;">16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80만원</p>
<p>광고물등</p>	<p>이행강제금</p>
<p>4) 연면적 10㎡ 이상</p>	<p>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p>
<p>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p>	
<p>1) 연면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p style="text-align: right;">3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33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38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45만원</p>
<p>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p style="text-align: right;">5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6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7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8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90만원</p>
<p>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p style="text-align: right;">10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2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4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6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80만원</p>
<p>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 이상 25.0㎡ 이하 - 25.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p style="text-align: right;">20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23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24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25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26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280만원</p>

<p>5) 연면적 50㎡ 이상</p>	<p>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p>
<p>광고물등</p>	<p>이행강제금</p>
<p>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p>1) 선전탑, 아치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p>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p>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p> <p>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p>30만원</p> <p>40만원</p> <p>50만원</p> <p>60만원</p> <p>60만원 +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p> <p>30만원</p> <p>50만원</p> <p>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p> <p>30만원</p> <p>40만원</p> <p>50만원</p> <p>60만원</p> <p>7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p>

<p>2) 교통안내소</p> <p>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p> <p>4) 도 조례로 정하는 편의시설물</p>	<p>가로형 간판에 준함</p> <p>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p>광고물등</p>	<p>이행강제금</p>
<p>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p> <p>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p> <p>1) 비행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p>2) 그 밖의 교통수단</p> <p>가) 연면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p>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p>다) 연면적 5㎡ 이상</p> <p>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p>150만원</p> <p>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p> <p>10만원</p> <p>20만원</p> <p>29만원</p> <p>35만원</p> <p>45만원</p> <p>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p> <p>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p>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p>가. 관계 법규(3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p>※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p> <p>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p>가. 교육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p>나. 교육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p>가. 관계법규(2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p>※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p> <p>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p>가. 교육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p>※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p> <p>나. 교육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p>가. 관계법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p>※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p>	<p>가. 교육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p>나. 교육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교육 <p>※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p>	
기타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제24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2,000원
- 면적 5㎡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24,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1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개당)	6,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30,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12,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광고물등	수수료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500원 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3,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광고물등	수수료
타. 입간판	2,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하. 벽보(1건)	2,500원
거. 전단(500매마다)	2,500원
너. 전자계시대(1건)	3,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전자계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문들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18,000원
	- 면적 5㎡ 초과 20㎡ 이하	26,000원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18,000원
	- 면적 3.5㎡ 초과 10㎡ 이하	26,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27,000원
	- 면적 50㎡ 초과 70㎡ 이하	49,000원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18,000원
	- 면적 10㎡ 초과 20㎡ 이하	26,000원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0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14,000원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800원
아. 그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4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12만원
- 0.5㎡ 이상 0.8㎡ 미만		17만원
- 0.8㎡ 이상 1㎡ 미만		25만원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33만원
- 1.3㎡ 이상 1.6㎡ 미만		42만원
- 1.6㎡ 이상 2㎡ 미만		58만원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67만원
- 2.3㎡ 이상 2.6㎡ 미만		92만원
- 2.6㎡ 이상 3.0㎡ 미만		117만원
라) 면적 3㎡		13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이하		7만원
- 0.6㎡ 이상 0.8㎡ 이하		10만원
- 0.9㎡ 이상 1.0㎡ 미만		13만원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17만원
- 1.4㎡ 이상 1.6㎡ 이하		25만원
- 1.7㎡ 이상 2.0㎡ 미만		42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50만원 58만원 75만원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8만원 12만원 13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17만원 22만원 25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33만원 50만원 58만원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남 해 군 공 보

(52) 제 582 호

2017년 5월 16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3천원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0천원
- 21장 이상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50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3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67만원
라. 1년 이상		333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남 해 군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20 ~
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
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 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상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의 규격	⑩ 검사 일자	⑪ 검사 구분	⑫ 검사 결과	검사자			⑬ 수	⑭ 직	⑮ 성	⑯ 비	
		③ 성	④ 업 수	⑤ 주 소															

364x257mm [보존용지(1종) 70g/㎡]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남해군 옥외 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남해군 옥외 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남해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6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도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해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남해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7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도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 및 「남해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남해군 공고 제2017 - 459호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2.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한 제출서류 최소화로 대군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법령의 근거 없는 자료 요구조항 삭제(안 제7조 및 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25,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974, 팩스 055-860-398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보호시설 설치)” 를 “(보호시설의 설치 등)” 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2항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보호시설 설치) ① ~ ② <생 략> <신 설></p>	<p>제3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군수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u></p>
<p>가.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u>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공고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유기동물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나.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u>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u></p>
<p>제8조(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 ① <u>군수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다. ② ~ ③ <생 략></p>	<p>제8조(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 <삭 제> 라. ① ~ ② <현행 ② ~ ③와 같음></p>

[관 계 법 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정부법」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 ①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와 그 범위, 공동이용의 목적·방식, 행정정보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동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460호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포상 조례

2. 개정이유

공적심사업무를 겸하는 남해군 인사위원회가 급증하는 공적심사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공적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의 신설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2)

나. 공적심사 업무 담당 위원회의 변경.(안 제9조2항)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117,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군 소속”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을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은”로 한다.

제9조2항 중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2(공적심사위원회) 군수는 표창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부서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주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 -----.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남해군 소속 ----- -----.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에 따른 포상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 -----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은 ----- ----- ----- ----- . , ----- -----.
제9조(포상절차)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절차)② ----- ----- 공적심사위원회의 ----- -----.
(신 설)	제9조2(공적심사위원회) 군수는 표창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사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부서 직제 순위에 따른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주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461호

남해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포상심의에 관한 사무권한을 심의 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재편하고, 구체성이 부족하였던 의결기준 및 절차, 공적심사기준 등을 신설하여 포상심사업무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적심사업무 사무주관부서 개정(안 제2조제2항)
- 나. 공적심사업무 의결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2조의2)
- 다. 공적심사 기준 신설(제2조의3)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117,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사무주관)

①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비롯한 타 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남해군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추천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과단소 및 직속기관에서 실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부의하는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적심사기준에 관한 서류
2. 공적조서
3.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에 한한다.)
4. 현지확인서(민간인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심의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 감사 업무 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④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유사한 공적으로 동일인물 또는 단체에 대하여 1년에 2회 이상 부의 할 수 없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조의3(공적심사 기준) 공적심사의 기준에 관하여는 사무주관부서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적심사 대상의 범위
2. 범죄 및 징계와 관련된 공적심사 배제대상의 범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과 및 직속기관에서 실시 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조(사무주관)</p> <p>①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비롯한 타 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남해군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추천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과단소 및 직속기관에서 실시한다.</p> <p>제2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p> <p>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p> <p>②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부의하는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적심사기준에 관한 서류 2. 공적조서 3.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에 한한다.)

<신 설>

- 4. 현지확인서(민간인에 한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심의 안전을 부의하는 경우 감사 업무 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④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유사한 공적으로 동일인물 또는 단체에 대하여 1년에 2회 이상 부의 할 수 없다.

제2조의3(공적심사 기준) 공적심사의 기준에 관하여는 사무주관부서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공적심사 대상의 범위
- 2. 범죄 및 징계와 관련된 공적심사 배제대상의 범위

남해군 공고 제2017 - 462호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를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3. 주요내용

가. 제설·제빙 목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나. 제설·제빙 정의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라.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까지 제설·제빙 범위 확대

마.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설·제빙 작업시기 구체화

－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 정립

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사. 제설·제빙 작업 중지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일몰, 폭풍, 이상한파 시에는 제설·제빙 작업 중지
- 아.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자. 제설·제빙 도구 비치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5월 1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25,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55-860-34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행정규칙
<p>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歩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p> <p>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22조의8(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p> <p>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p> <p>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p> <p>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p> <p>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층시설물 및 2층시설물</p>	<p>위임행정규칙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45호)</p> <p>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대상 시설물의 구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제1호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p> <p>1. 공업화학관강구조(PEB구조) 시설물</p> <p>2.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p> <p>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 및 농어촌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 (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 (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 (제설·제빙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남해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9조 (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 ²)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고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²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²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남해군 공고 제2017 - 465호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생활 속 안전위해 요소 제거 및 개선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신고활성화 등을 통해 안전도를 개선하고자 「안전신고 포상금 조례」를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근거(안 제1조)

나.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안 제3조)

다.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안 제4조)

라.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제한(안 제5조)

마.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바.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5월 19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426, 팩스 055-860-372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55-860-34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p>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p>	<p>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① 국 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정부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5, 2014.11.19, 2015.6.30></p> <p>②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6.30></p> <p>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30></p>	<p>제21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 라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하 "포상금지급자"라 한다)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자가 정한다. <개정 2017.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여도 2. 안전문화 확산 활동 참여도 3.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 4. 사회적 관심도 <p>② 포상금지급자는 영 제8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 급 여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2.3></p> <p>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국민안전처에 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안전 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 무원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포상금지 급자가 정하여 고시한다.</p>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군수는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 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제5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내용으로 기존에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2.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3.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하에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
- 2.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

-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비치한다.

제8조(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470호

광천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광천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8일

남 해 군 수

1. 공사의 개요

- 가. 공 사 명 : 광천소하천 정비공사
- 나. 공사위치 :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974번지 외 64필지 일원
- 다. 공사내용 : 하천정비 L=1.01km, B = 8~15.2m
- 라. 공사기간 : 2016.1 ~ 2018.12.31.
- 마. 공사시행자 :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974번지 외 52필지 / 10,162㎡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7. 4. 28 ~ 5.12(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 다.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17년 6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55-860-32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예정 토지조서 1부.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광천소하천 정비공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상토지 및 소유자

토 지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날인 (인감)	전화번호 (주택및휴대폰)	비고
			성 명	주 소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명	수행지사	연락처	비고

2017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 소유자 확인란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토 지 조 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주소	자	성명	성명또는 명칭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담초	분할		공부상	편입예상 면적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남해	창선	광천	1001		천	15,831	3,622	울진광역시 동구 진하동		국토**부				
2	남해	창선	광천	974	974-1	답	694	367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서*호				지분1/2
3	남해	창선	광천	975	975-1	답	1,322	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포대로		문*희				지분1/2
4	남해	창선	광천	976	976-1	답	949	168	경상남도 남해군 상동면 봉화로		이*희				
5	남해	창선	광천	979	979-1	답	456	16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선				
6	남해	창선	광천	978	978-1	전	195	13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진*숙				
7	남해	창선	광천	신1-7	신1-8	임	1,686	8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서*일				
8	남해	창선	광천	980	전필	답	879	87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박*욱				
9	남해	창선	광천	1012		도	512	2			국토**부				
10	남해	창선	광천	신10-2		도	198	85			남*군				
11	남해	창선	광천	신10-3		도	503	189			경**도				
12	남해	창선	광천	983-2		도	43	43			남*군				
13	남해	창선	광천	983-3		도	140	140			경**도				
14	남해	창선	광천	983-4		도	21	21			경**도				
15	남해	창선	광천	983-1	983-5	답	1,052	41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이*군				
16	남해	창선	광천	972	전필	전	179	17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이*권				
17	남해	창선	광천	973	973-1	답	1,068	5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김*춘				
18	남해	창선	광천	963-1	963-3	답	588	5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박*수				
19	남해	창선	광천	959	959-1	답	833	13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김*모				
20	남해	창선	광천	956	956-1	답	274	130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김*욱				
21	남해	창선	광천	955	전필	답	56	5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이*오				
22	남해	창선	광천	954	전필	답	1,064	1,06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일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소유자			성명	성명또는 명칭	관계인		비고
	군	면	리	당초	분할		공부상	편입예상	주소	주소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주소	
23	남해	창선	광천	918	918-1	담	926	191	경상남도 사천시		이*태					
24	남해	창선	광천	917	917-1	담	555	15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이*권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새마을금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근저당권		
25	남해	창선	광천	1013		도	2,264	184			국토**부					
26	남해	창선	광천	913	913-2	담	1,468	174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박*철					
27	남해	창선	광천	912-1	전필	도	519	51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이*탁					
28	남해	창선	광천	911-2	전필	도	7	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이*윤					
29	남해	창선	광천	910-2	전필	도	23	2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준					
30	남해	창선	광천	909-4		도	13	13			경**도					
31	남해	창선	광천	902-6		도	1,301	664			경**도					
32	남해	창선	광천	902-3		도	972	273			남*군					
33	남해	창선	광천	909-1	전필	담	205	20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박*수					
34	남해	창선	광천	905-1	905-6	담	376	11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동					
35	남해	창선	광천	904-1	904-6	담	528	6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이*순					
36	남해	창선	광천	903-1	903-3	담	671	16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이*순					
37	남해	창선	광천	886-1	886-5	담	258	18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이*순					
38	남해	창선	광천	886-4		유	2,989	456			남*군					
39	남해	창선	광천	886-2	전필	구	17	1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박*수					
40	남해	창선	광천	886-3	전필	담	714	71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박*수					
41	남해	창선	광천	887	887-1	담	631	5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박*근					
42	남해	창선	광천	885	885-1	담	1,673	19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자	정*성	창원시 성신구 인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기등기		
43	남해	창선	광천	884	884-1	담	572	4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이*주					
44	남해	창선	광천	877-2	877-3	담	1,028	40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이*덕	노*세미를 금고	경상남도 사천시 각산로	근저당권1 지상권1		
45	남해	창선	광천	874-1	874-4	담	592	11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의					
46	남해	창선	광천	875	875-1	담	1,150	8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의					
47	남해	창선	광천	874	874-1	담	592	34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김*의					

남해군 공고 제2017 - 472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탐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남 해 군 수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탐동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 출입구간 :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80-1번지 외 11필지(붙임 참조)

2. 출입기간 : 2017. 4. 28 ~ 사업 종료시까지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안전총괄과장)

4.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안전총괄과 (☎055-860-3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용지조서 1부. 끝.

용 지 편 입 조 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m ²)		소 주	유 소	자 성 명	관계인(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군	면		대장	현재	총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1	남해	고현	대사	780	4	진	진	192	8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김*일			
2	남해	고현	대사	780	3	대	대	138	138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김*준			
3	남해	고현	대사	780	10	도	도	33	33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박*실			지분 2분의1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박*화			지분 2분의1
4	남해	고현	대사	780	15	대	대	141	141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박*봉			지분 403분의132
5	남해	고현	대사	780	19	임	임	162	162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박*봉			
6	남해	고현	대사	780	1	임	임	2,149	378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정*민			
7	남해	고현	대사	780	9	도	도	10	10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박*실			지분 2분의1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박*화			지분 2분의1
8	남해	고현	대사	780	2	대	대	221	221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장*규			
9	남해	고현	대사	780	8	도	도	7	7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박*실			지분 2분의1
										남해군 고현면 남치리	박*화			지분 2분의1
10	남해	고현	대사	780	14	대	대	52	52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정*연			
11	남해	고현	대사	617	2	도	도	63	63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남*군			
12	남해	고현	대사	617	1	임	임	1,405	107	경상남도	경상*도(교*람)			
계								4,573	1,320					

남해군 공고 제2017 - 478호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해군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남 해 군 수

1. 자치 법규명 : 『남해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 가.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환경녹지과에서 시행하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환경녹지과로 일원화 추진됨으로써 지원범위, 지원대상, 사업비 지원액 등을 환경부 지침에 맞도록 개정하고
- 나. 신청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여 신청에 애로가 없도록 하며 사업시행 방법을 다양화하여 행정과 주민들의 부담이 없는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나. 지원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3조)
- 다. 지원대상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슬레이트 처리와 환경부의 대상으로 확대함(안 제4조)
- 라. 사업비 지원을 환경부의 지침으로 통일함(안 제8조)
- 마. 지원신청을 관할 읍면장 또는 군수로 하여 현 추진방법을 반영함(안 제9조)
- 바. 지원신청자의 자격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 사. 사업의 시행방법을 다양화하고 지원시기를 정함(안 11조)
- 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함(안 13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9일까지 남해군(참조: 환경녹지과, 전화 055-860-3272 / FAX 055-860-3707, k6870@korea.kr)에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 개정 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남해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남해군 조례 제2017 - 478호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사회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받은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사회취약계층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4조(지원대상)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의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경우
4. 사회취약계층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 경우
5.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른 지붕 개량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지붕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지붕철거 후 지붕개량의 경우에는 2백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 또는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①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 및 폐기물 등 모든 인·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회취약계층은 요청이 있을 경우 교부결정시 지급하고 완료된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면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슬레이트 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석면슬레이트 지붕건축물의 지붕개량 시 사후관리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488호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폐지이유

- 사회복지기금은 법정기금이 아닌 자체기금으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아동·청소년 복지를 위해 2000년에 설치하여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금은 일반회계와 차별성이 있는 행정·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 필요성이 있을 경우 설치·운영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 정비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
- 사회복지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노인, 장애인, 한부모·아동·청소년 복지 사업으로 활용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5월 23일까지

이 자치법규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03,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정책팀(전화 055-860-38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남해군 사회복지기금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508호

2017/2018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승인된 2017/2018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산업법시행령 제2조 제7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남 해 군 수

□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결정 내역

【 양식어업 】

○ 신규개발

시 군	어업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위치	신청면적	승인여부	도면번호
소계				5건	54.1ha		
남해군	패류양식	가두리식	전복	창선 진동	9.0	조건부 승인 (타 어업 분쟁조정 후 처분)	6
“	해조류양식	수하식	미역 다시마	창선 진동	10.0	조건부 승인 (타 어업 분쟁조정 후 처분)	8
“	해조류양식	수하식	미역 다시마	미조 향도	10.0	조건부 승인 (타 어업 분쟁조정 후 처분)	9
	해조류양식	수하식	미역 다시마	창선 서대	10.0	조건부 승인 (타 어업 분쟁조정 후 처분)	10
“	패류양식	살포식	새고막	창선 서대	15.1	승인	11

○ 재 개 발

시 군	어업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어장위치	신청면적	승인여부	도면번호
소계				14건	51.0ha		
남해군	패류양식	바닥식	전복	삼동 동천	2.0	승 인	12
“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창선 광천	5.0	승 인	13
“	패류양식	살포식	“	창선 광천	5.0	승 인	14
“	패류양식	살포식	“	창선 광천	3.0	승 인	15
“	패류양식	살포식	“	창선 광천	3.0	승 인	16
“	패류양식	살포식	“	이동 초음	5.0	승 인	17
“	패류양식	살포식	피조개	이동 초음	5.0	승 인	18
“	패류양식	살포식	피조개	남해 선소	3.0	승 인	19
“	패류양식	살포식	새꼬막	설천 진목	3.0	승 인	20
“	패류양식	살포식	“	창선 광천	3.0	승 인	21
“	패류양식	살포식	피조개	설천 진목	3.0	승 인	22
	패류양식	살포식	새고막	고현 이어	3.0	승 인	23
“	패류양식	살포식	“	남해 선소	3.0	승 인	24
“	패류양식	살포식	“	설천 진목	5.0	승 인	25

○ 대체개발

시 군	어업 종류	양식물	신청면적	어장위치	승인여부	도면 번호
소계		13건	26.3			
남해군	패류양식	새고막	4.0	창선 광천	조건부 승인 (선박항해 및 타 어업과의 분쟁조정 등 해소 후 처분)	32
“	패류양식	새고막	3.7	창선 광천	조건부 승인 (선박항해 및 타 어업과의 분쟁조정 등 해소 후 처분)	33
“	패류양식	새고막	3.2	창선 광천	조건부 승인 (선박항해 및 타 어업과의 분쟁조정 등 해소 후 처분)	34
“	패류양식	새고막	3.2	창선 서대	조건부 승인 (선박항해 및 타 어업과의 분쟁조정 등 해소 후 처분)	35
“	패류양식	새고막	2.0	설천 진목	조건부 승인 (선박항해 및 타 어업과의 분쟁조정 등 해소 후 처분)	36
“	패류양식	새꼬막	2.4	창선 광천	조건부 승인 (선박항해 및 타 어업과의 분쟁조정 등 해소 후 처분)	37
“	패류양식	전복	1.6	설천 진목	조건부 승인 (선박항해 및 타 어업과의 분쟁조정 등 해소 후 처분)	38
“	복합양식	가리비 미역	4.0	삼동 동천	조건부 승인 (선박항해 및 타 어업과의 분쟁조정 등 해소 후 처분)	39
“	패류양식	홍합	2.2	창선 진동	승 인	40
“	어류등 양식	어류	2.0	미조 양풍	승 인	41
“	패류양식	굴	6.509	설천 금음	조건부 승인 (선박항해 및 타 어업과의 분쟁조정 등 해소 후 처분)	42
“	패류양식	굴	6.555	설천 금음	조건부 승인 (선박항해 및 타 어업과의 분쟁조정 등 해소 후 처분)	43
“	패류양식	굴	6.555	설천 금음	조건부 승인 (선박항해 및 타 어업과의 분쟁조정 등 해소 후 처분)	44

【 마을어업 】

○ 신규개발

시 군	어업명칭	어업종류	양식물	수면위치	신청면적	승인여부	도면번호
소계				5건	92.42		
남해군	마을어업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창선 당항	6.28	조건부 승인 (타 어업 분쟁조정 후 처분)	1
“	마을어업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창선 냉천	10.54	조건부 승인 (타 어업 분쟁조정 후 처분)	2
“	마을어업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창선 식포	68.40	조건부 승인 (타 어업 분쟁조정 후 처분)	3
“	마을어업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서면 서상	5.80	조건부 승인 (타 어업 분쟁조정 후 처분)	4
“	마을어업	마을어업	패류, 해조류 등	서면 서상	1.40	조건부 승인 (타 어업 분쟁조정 후 처분)	5

○ 재 개발

시 군	어업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수면위치	신청면적	승인여부	도면번호
소계				6건	219.819		
남해군	마을어업	바닥식	패류, 해조류 등	남해 선소	89.0	승 인	26
“	마을어업	바닥식	패류, 해조류 등	고현 갈화	27.20	승 인	27
“	마을어업	바닥식	패류, 해조류 등	설천 노량	6.50	승 인	28
“	마을어업	바닥식	패류, 해조류 등	설천 동홍	16.20	승 인	29
“	마을어업	바닥식	패류, 해조류 등	설천 봉우	14.50	승 인	30
“	마을어업	바닥식	패류, 해조류 등	남해 동산	18.0	승 인	31

【 정 치 망 】

○ 대체개발

시 군	어업명칭	어업종류	양식물	수면위치	신청면적	승인여부	도면번호
				2건	24.765		
남해군	정치망	정치망	멸치외	미조 송정	12.090	조건부 승인 (타어업과의 분쟁 조정 해소 및 보호구역 관계법령 준수 후 처분)	45
“	정치망	정치망	멸치외	상주 양아	12.675	조건부 승인 (타어업과의 분쟁 조정 해소 및 보호구역 관계법령 준수 후 처분)	46

남해군 공고 제2017 - 51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12일

남 해 군 수

-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 2. 행정예고 기간 : 2017. 05. 12 ~ 06. 01(20일간)
- 3. 의견제출 기간 : 2017. 05. 12 ~ 06. 01(20일간)
- 4. 공고방법 : 남해군 공보 및 게시판
-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고
		지정면적 (㎡)	유형	등급		
초전지구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556번지 일원	37,900	해일 위험	나	태풍과 폭풍해일 발생시 조위 상승 및 파랑의 월파로 인한 침수피해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초전지구	'17년 이후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파제연장(L=50.0m, B=7.0m) • TTP증설(L=250m, 12.5TON급) 	

※ 사업시기는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에 따라 변동됨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해군청 안전총괄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서변리 24-1) 안전총괄과

· 전 화 : 055) 860-3294

· 팩 스 : 055) 860-3727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붙임
1. 초전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1부
 2.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3. 행정예고안 검토협의 요청서 1부
 4. 행정예고안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붙임1]

초전재해위험개선(예정)지구 현황

I. 자연재해위험개선(예정)지구 현황

대상지구 개요

- 지구명 : 초전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556번지 일원
- 위험지구 지정개요
 - 유형 : 해일 위험지구 / 등급 : 나
 - 지정면적 : 37,900m²

위험요인 및 피해주기

- 위험요인 : 태풍과 폭풍해일 발생시 파랑의 월파로 인한 침수피해
- 피해주기 : 1년(일우량 183mm 또는 시우량 55mm로 1시간연속시)

II. 과거 피해현황

과거 피해현황

일 시	피 해 개 요		조 치 사 항
	원 인	내 용	
'03.09.12 ~ 09.13	· 제14호 태풍 매미	· 강우량 293mm, 주택 침수피해 · 주거지 45동	
'12.09.16 ~ 09.17	· 제15호 태풍 볼라벤, 덴빈	· 강우량 391mm, 주택 침수피해 · 주거지 29동	
'16.10.5	· 제18호 태풍 차바	· 강우량 183mm, 주택 침수피해 · 주거지 29동	

피해사진(피해기간 2012.09.16, 강우량 151.5mm, 최대시우량 59.0mm)



피해사진(피해기간 2012.09.16, 강우량 151.5mm, 최대시우량 59.0mm)



피해사진(피해기간 2016.10.5, 강우량 183.0mm, 최대시우량 54.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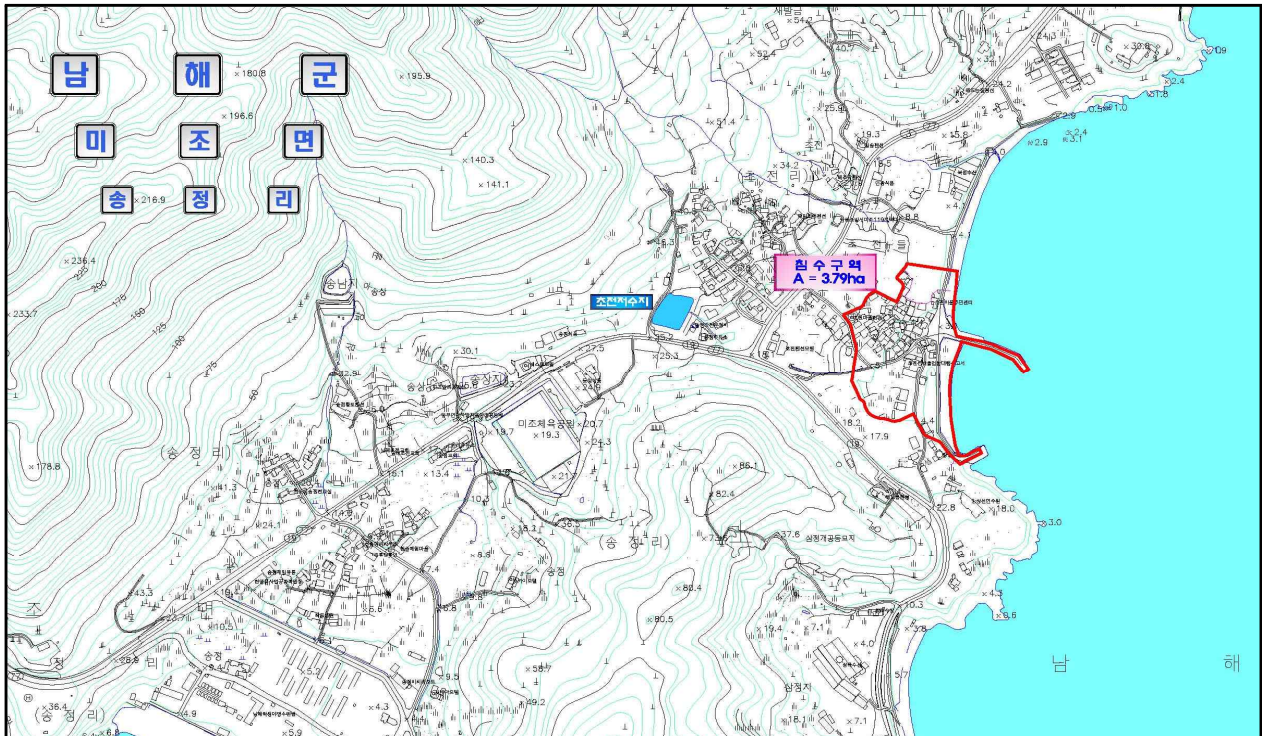


피해사진(피해기간 2016.10.5, 강우량 183.0mm, 최대시우량 54.5mm)



Ⅲ. 현황

□ 지형도면



□ 현황사진(침수지역 현황도 등)



IV.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 정비사업 추진계획

○ 사업량 : 방파제연장(L=50.0m, B=7.0m)

TTP(12.5TON/EA) 보강(L=2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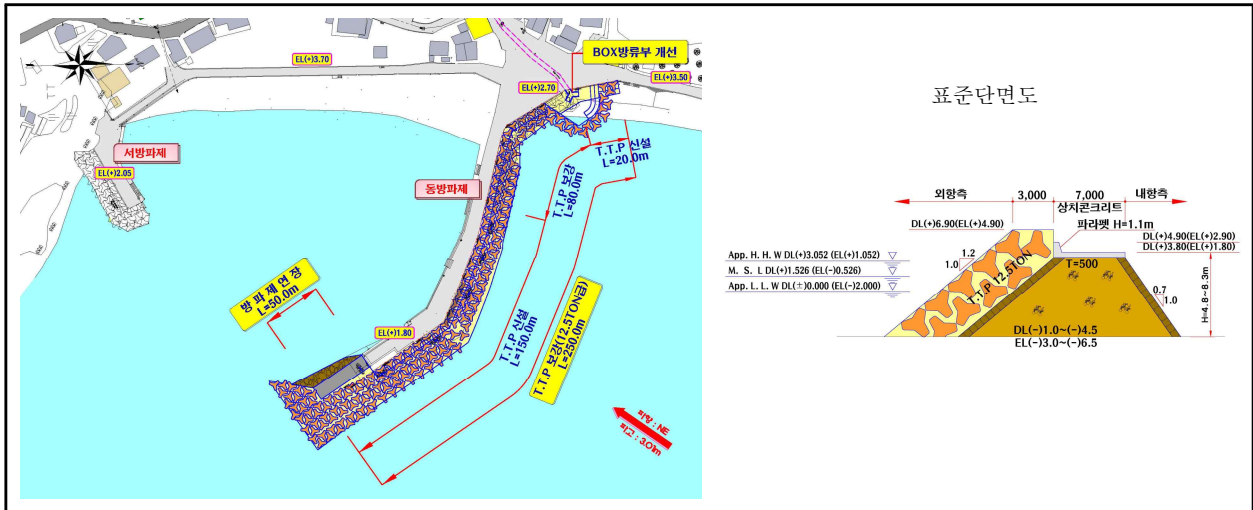
○ 사업비 : 1,500백만원(시설비 1,400, 기타 100)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2016까지	연차별 투자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사업내용						
사업비	1,500	-	200	1,300		
국비	750	-	100	650		
지방비	750	-	100	650		

《사업계획 단면도 또는 상세도》



□ 정비효과

○ 인명보호 : 47세대 141명

○ 건물보호 : 47동(가옥)

○ 시가지 및 농경지보호 : 3.79ha(주거지 2.66ha, 농경지 1.13ha)

[붙임2]

주 민 의 견 제 출 서

공 고 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 구 명	초전지구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붙임3]

행정예고안 검토협의 요청서

수신	담당관·과장, 읍·면·동장	발신	안전총괄과
제안부서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담당	강태병
행정예고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검토요구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계획의 중복성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행정예고안의 주요 골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도면 참조”		

덧붙임 : 지구현황 각1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행정예고안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안전총괄과장 최병현 (인)

[붙임4]

행정예고안 검토의견 통보서

수 신	안전총괄과	발 신	담당관·과장, 읍·면·동장 (인)	
검 토 부 서	담당관·과, 읍·면·동 ○○담당	담당자 성명		
행정예고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검토사항	검 토 사 항	유	무	특이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계획의 중복성			
	3. 월권사항 또는 공익 저해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			
	5. 사전승인·허가 등 기타 문제점			
검 토 결 과 (조 문 대 비 표)				
행정예고안(검토요구안)	실과소 검토안(의견)	검 토 사 유		

〈비고〉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

알 림

남해군의회 규칙 제25호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제2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7년 5월 16일

남 해 군 의 회 의 장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남해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남해군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언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작성, 첨부”를 “작성·첨부”로 한다.

제3조 중 “상당한”을 “적절한”으로 한다.

제4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리”를 “접수”로 하고,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것

제4조제4호 중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청원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후단 중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청원 회부와 심사)”를 “(청원서 회부와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면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한다.

② 청원 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제3항 중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청원심사를 회부받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제하고, 10일내”를 “제외하고 10일 내”로 한다.

제7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위원회”로, “청원인”을 “청원인,”으로, “자료”를 “사람으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진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남해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 중 “심사, 의결”을 “심사·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심사”를 “심사·의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 의결”을 “심사·의결”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을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부의하지” 를 “부치지”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의할” 을 “부칠” 로, “1/3이상” 을 “3분의 1 이상” 으로, “부의하여야” 를 “부쳐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 를 “부치기로 결정하는 경우”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체없이” 를 “지체 없이” 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를 “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의할” 을 “부칠” 로 한다.

제14조 중 “명기하고” 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로, “서명날인” 을 각각 “서명 또는 날인” 으로 한다.

제15조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6조 중 “심사, 의결” 을 “심사의결” 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9조의” 로, “지방자치법 및 남해군의회의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 를 “「지방자치법」 및 「남해군의회의회의 규칙」” 로 한다.

제17조 중 “구성, 운영” 을 “구성·운영” 으로, “남해군의회의위원회조례와 남해군의회의회의규칙” 을 “「남해군의회의위원회 조례」와 「남해군의회의회의 규칙」”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개의원	서명 또는 날인	
소개년월일		

소개의견

Blank area for providing the opin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applicant.

[별지 제2호서식]

청원철회요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개의원	서명 또는 날인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Blank area for the reasons for withdrawal request.